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43
----------	-------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 의 자 : 박홍배 · 민병덕 · 이광희
김현정 · 서미화 · 박정현
홍기원 · 전진숙 · 조계원
윤준병 · 이정현 · 박지원
김태년 · 박 정 · 이정문
이수진 · 김남근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주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대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주주는 보유주식을 공정한 조건으로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등 다수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잔여 주주에게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매수한 가격을 고려하여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등의 매수등으로 그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식등을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제1항 신설).

나. 주식등의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의 예외로 규정함(안 제133조의2제2항 신설).

다.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신설).

라. 의무공개매수의 가격은 최근 1년간 매수등을 한 주식등의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함(안 제141조제2항 신설).

마.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매수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규정함(안 제145조제2항·제3항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총수(자기주식을 제외한다)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수를 제외한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이하 “의무공개매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후에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가 주식등을 매수등을 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정후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의무공개매수자”라 한다)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대항공개매수”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대항공개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로 한다.

제140조 본문 중 “공개매수공고일”을 “공개매수공고일(의무공개매수자의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의 1년 전부터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매수등을 한 주식등의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 하여야 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득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취득한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제2항제9호 중 “제141조를”을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개매수를”을 “공개매수 및 제133조의2제1항의 의무공개매수를”로 한다.

제445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46조제26호 중 “제145조”를 “제145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 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총수(자기주식을 제외한)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수를 제외한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이하 “의무공개매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u> <u>1.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후에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2.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최대주주가</u>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가 주식등을 매수등을 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장후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 ④ (생략)

<신 설>

⑤ (생략)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항공개매수
(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
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
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
다.

② 공개매수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의무공개매수자”라 한다)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의무공개매수
자가 아닌 공개매수자는 대항
공개매수-----

②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
개매수자-----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를 철회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 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

-----.

-----.

③ 의무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

④ (현행과 같음)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공개매수공고일(의무공개매수자의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

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② 공개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생략)

<신 설>

----- . 다만, 의무
공개매수자가 아닌 공개매수자
는-----

1. · 2. (현행과 같음)

②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의 1년 전부터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매수등을 한 주식등의 최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 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하

<신 설>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는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득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취득한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조사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때에는 그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 8. (생략)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u>공개매수</u>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10.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u>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u>-----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공개매수 및 제133조의2제1항의 의무공개매수를</u>----- ----- ----- -----
---	---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③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 (생략)

<신설>

-----.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

20. ~ 48.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략)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 64. (생략)	<u>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u> 20. ~ 48. (현행과 같음) 제446조(벌칙)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제145조제1항·제3항----- ----- ----- ----- 27. ~ 64. (현행과 같음)
--	--